

군산시의회 사무전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0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478호

군산시의회 사무전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의회 단위업무별 전결처리 기준표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의회운영	가 의회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의회 관련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 폐지 입안 공포	기안				○
	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라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기안				○
	마 의원 간담회 운영	기안				○
	바 집행기관과의 협조관계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전체 의원 연수계획 수립	기안				○
	의원 국외연수 허가 및 계획서 수립	기안				○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기안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의원관련	자매도시 교류 운영	기안				○
	가 의원등록	기안		○		
	나 의원사직 허가, 사직허가 결정 통지	기안				○
	다 의원 청렴, 윤리,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의원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기안	○			
	마 의원의 신분예 관한 사항	기안				○
	바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기안	○			
	사 의원의 강의신고	기안	○			
	아 청가 허가	기안				○
	자 국내외 연수, 교육계획 수립					○
	1) 전체의원	기안				○
	2) 위원회	기안			○	
의사관련	가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기안	○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기안			○	
	다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			
	라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안			○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기안			○	
	바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기안	○			
	사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기안			○	
	아 의원 국외연수 계획 수립 및 심사요구	기안			○	
	자 의사일정 협의	기안			○	
	차 간담회 · 설명회 등 운영	기안			○	
	카 현장방문	기안			○	
	타 자문 요청 및 회신	기안	○			
	가 출장 · 교육 · 조퇴 · 외출의 허가					
	1) 사무국장	기안				○
	2) 전문위원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복무	3) 6급 이상		기안		○		
	4) 7급 이하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기안	○			
	나 휴가·병가						
	1) 사무국장		기안				○
	2) 전문위원		기안		○		
	3) 6급 이상		기안		○		
	4) 7급 이하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기안	○			
	다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		기안		○		
	라 공무원의 연수계획 및 연수자 결정		기안		○		
	마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요구		기안		○		
문서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기안	○			
기획	라 유관기관 자료제출		기안		○		
	가 사무국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나 사무국 연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안		○		
예산 및 회계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 포함)		기안		○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제출		기안		○		
	다 예산배정 요구		기안	○			
	라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		
	마 의원 및 사무국 예산지출관련 방침		기안		○		
	바 세입·세출 결산		기안		○		
	사 예산집행품의						
	1)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안				○
	2) 2,0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안		○		
	아 급여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			
	자 지출계산서 제출		기안	○			
	차 재물조사		기안	○			
	카 물품 수급관리		기안	○			
	나 예산집행현황						
인사	가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기안				○
	2) 공무원 휴직 인사 발령		기안				○
	3)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안				○
	4)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기안				○
	5) 호봉승급 발령 통보		기안		○		
	나 사무국내 전보		기안				○
	다 직원포상 추천		기안		○		
	라 근무성적 평정						
	1) 근무성적 평정 계획 수립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구성 운영		기안		○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안				○
	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안				○
	마 사무국장 사무 인수·인계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바	사무인수·인계(5급 이하)	기안		○		
	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기안				○
	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계약	기안		○		
	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기안				○
	차	교육 계획 및 추천	기안		○		
포상	가	의장 포상	기안				○
소송 등	가	소송 응소 계획(수행) 보고	기안				
	나	소송결과 보고	기안				
행사	가	전체 의원단위 중요행사	기안				○
	나	기타 일반행사	기안		○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기안				○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기안		○		
	다	공인관리	기안		○		
보안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		
본회의장 방정석 관리	가	방청권 교부 및 안내	기안	○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기안	○			
	다	차량운행일지	기안	○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	기안	○			
청사관리	가	청사 방호	기안	○			
	나	청사시설 개·보수, 장비유지 관리	기안	○			
	다	음향시설 및 방송 장비 관리 및 운영	기안	○			
	라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기안	○			
의회운영 일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기안				○
	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기안	○			
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회의소집 공고	기안				○
	다	의사일정 작성,협의	기안				○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
	마	본회의장 의사 진행 관련 문건 작성	기안				○
안전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기안				○
	다	의안관리	기안		○		
시정질문	가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처리	기안				○
	나	출석요구 통지	기안				○
	다	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
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	기안		○		
의정백서	가	의정백서 발간	기안				○
회의록	가	회의록 발간	기안		○		
	나	회의록 자구 정정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본회의장 관리	다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	기안		○		
	가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기안				○
	나	경호권 발동	기안				○
의원 청원	가	청원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기안				○
진정서 접수 및 처리	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기안				○
홍보 및 보도자료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기자회견 및 인터뷰, 기획보도	기안				○
	다	의장 및 의원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		
	라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	기안				○
	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기안	○			
	바	방송실 운영	기안	○			
	사	신문스크랩	기안	○			
의회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년경) 수립	기안				○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군산시의회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0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479호

군산시의회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의회 채용권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5.“채용부서”란 근로자를 선발·채용, 근로계약 체결·관리 및 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용부서를 말한다.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 비리로 인하여 합격한 사람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군산시의회의가 정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채용심의기구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비공무원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

런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의회 소속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채용 담당계의 계장이 된다.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적기에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부서의 의무) ① 채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용 담당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

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시험방식은 업무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실시하되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 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 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채용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의 채용광고절차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되,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광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단기간(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

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⑥ 해당 직무 특성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속부서에서 부담한다. 그 외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 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사용부서장, 담당자 등)가 있는 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

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채용 담당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 심사위원 기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의회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 후 채용공고에 반영하고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고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

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고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0호 서식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권자가 사전에 정하여 채용공고에 반영하고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 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결정 여부·규모·임용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 및 채용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 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사용부서는 사전 협의 하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합격 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 비리
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1제16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진행
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7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
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별지 제15호서식)
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
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
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직으로의 전환) ①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무원직으로 전환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부서 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응시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 자격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우대 사항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가점 대상	☐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가점)	취업지원(법정가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근무경력 ☐ 관내거주 ☐ 자격증 소지자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분 야		성 명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20 . . . 작 성 자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글자 크기14)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 기간제	전형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군산시의회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고 있으며,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군산시의회의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 채용부서 :
- ☐ 채용분야 :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서류심사 채점표(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예시)

계약형태	기간제	직 종			
성 명				응시 번호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여 / 부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여 / 부

구 분	세부기준	배 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점)	◦ 경력없음 ~ 1년 미만	10	
	◦ 1년이상 ~ 2년미만	20	
	◦ 2년이상	30	
지원분야 자격증 (10점)	◦ 산업기사, 기능사 등	5	
	◦ 기술사, 기사 등	10	
지원분야 적합성 (60점)	◦ 소통·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대한 이해	60	
계 (100점)			
감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10	
	◦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세부기준)	5, 10	
합계			

특이사항	*			
------	---	--	--	--

채점일	20 . . .	채점자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면접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예시)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면접 표준질문서(예시)

구 분	중점평가항목	질문 및 검토사항 예시
1.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직업의식 - 청렴성 - 우리 기관에 대한 기대 - 근무지속성	- OOOO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 평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는? - 자신이 공직에 와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 OOOO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고, 평소 가졌던 생각은?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교양지식	-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전문분야 및 특징은? - 본인이 가장 내세울 만한 업무실적은? 그 이유는? - 예정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 - 관련 영역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 선발 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그 분야에 대해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의 전개방식 - 핵심의 접근방법	- 자기소개 또는 3분 스피치 후 평가 - 발표 내용의 논리정연성 판단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성실도 - 복장 - 자세	- 지금까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 단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다면?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미래지향성 - 진취성 - 대인관계	-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 지금까지 성과를 얻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본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급자가 본인을 신뢰하고 자주 일을 맡긴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일을 제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상급자가 본인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 -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일을 처리한 경험은? - 장래에 대한 계획 및 포부는?

<별지 제7호서식> 면접시험 평정표(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필 적 감 정 용	기 재 란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채용직종	
		본인필적	응시부서	○○○○과
성 명			수험번호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평정점수	평가등급		
		상(10점)	중(6점)	하(2점)
가. 공무원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점 수 합 계				
위 원 서 명	성명	(서명)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면접시험 집계표(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예시)

응시분야	기간제 (○○○○○)	채용예정기관	○○○○○
------	----------------	--------	-------

수험 번호	성 명	심사위원 점수						가· 감점	총계	순위
		1위원	2위원	3위원	합계	평균	합·불			

심사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9호서식> 면접시험 결정서(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예시)

기간제 (ㅇㅇㅇㅇㅇ)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20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분	가 점 대 상	가산비율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기타 가점	· 부서 채용 상황에 따라 동종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자, 관내 거주자 등 기타 가점 부여 가능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2%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 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부서 채용 상황에 따라 기타 가점 부여 가능

<별지 제11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0000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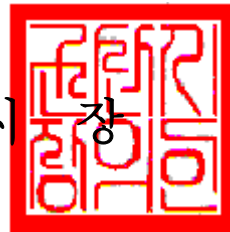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26-2288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

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안내·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

나. [별표8]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dongseok7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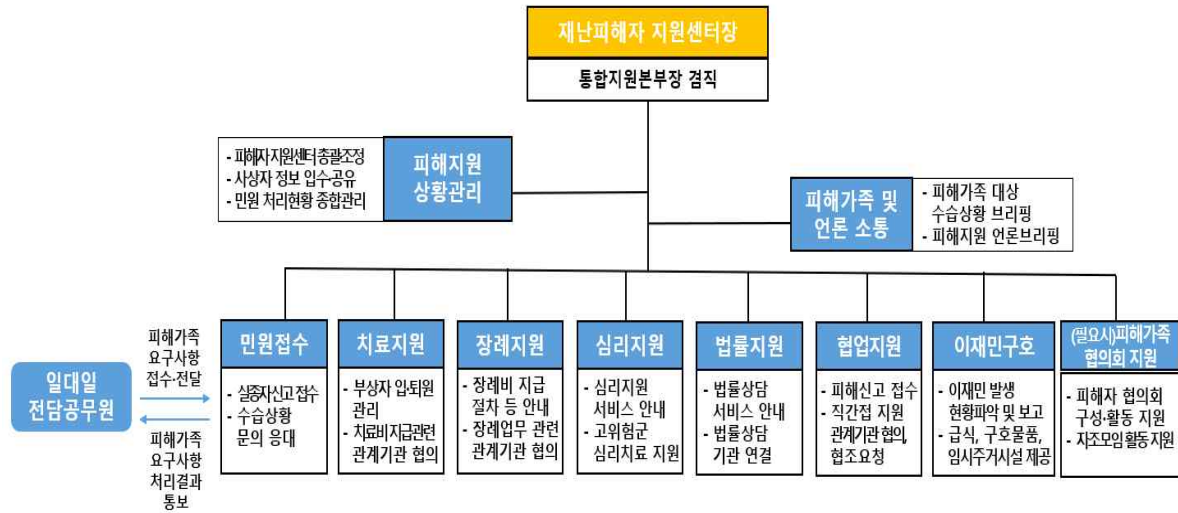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4.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나. ----- 11월 15일-----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u>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u> <u>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u> <u>사항을 지원해야 한다.</u>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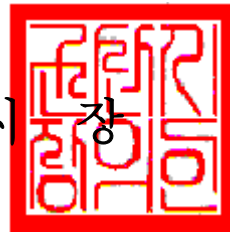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26-2289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

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안내·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 제3항에 임무 추가

나. 조례 제7조 제4항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추가

다.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개정

라. [별표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개정

마. [별표3] 신설(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dongseok7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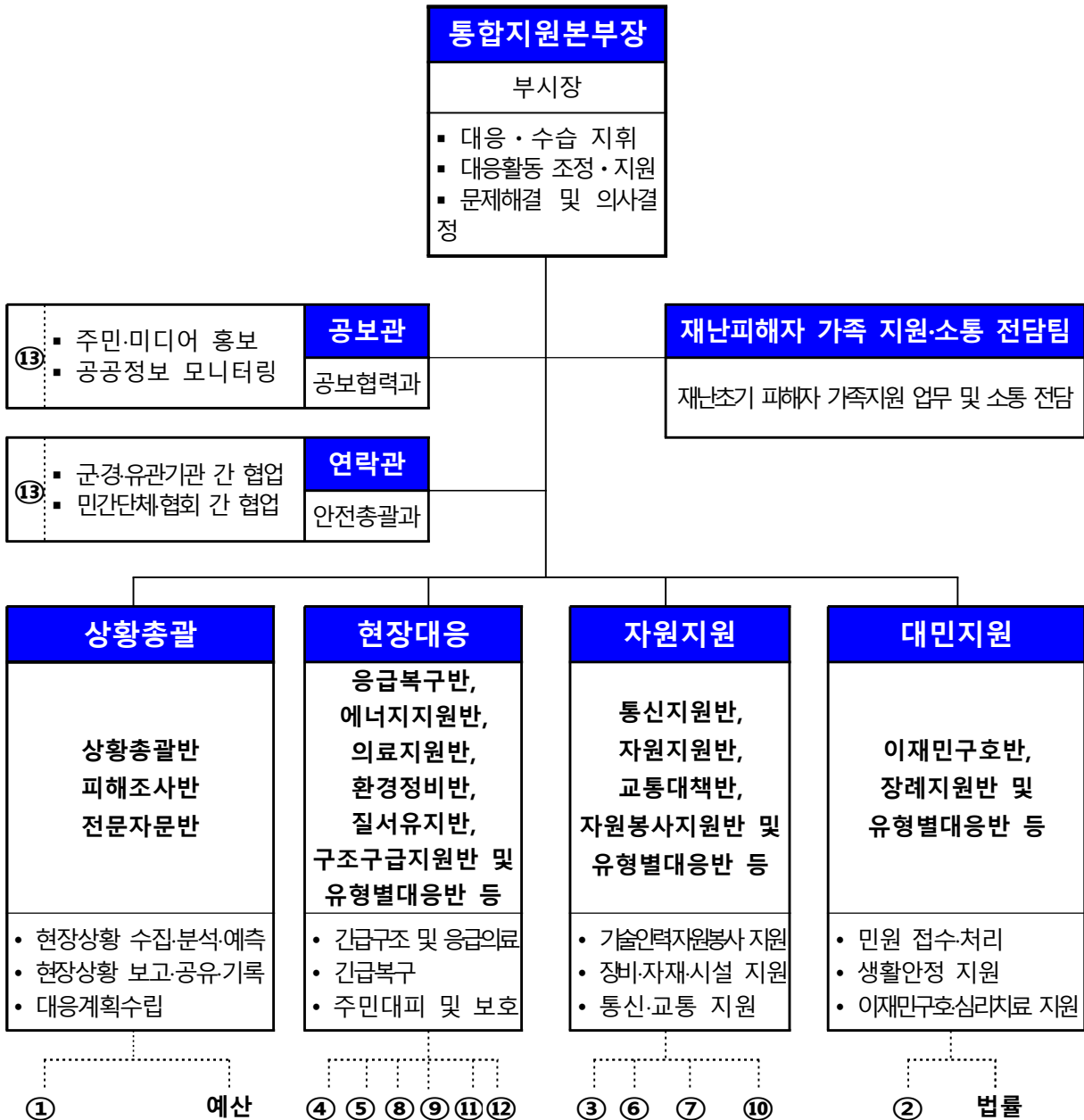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등 (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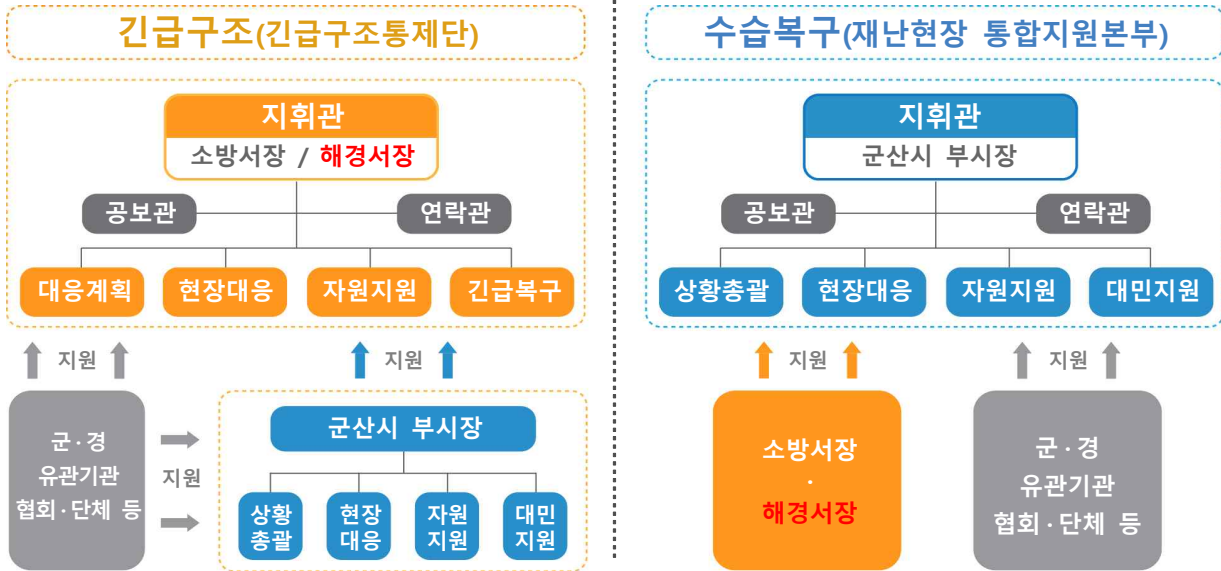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 | | | | |
|-------------|------------|----------|--------------|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긴급통신지원 | ④ 시설응급복구 |
| ⑤ 에너지기능지원 | ⑥ 재난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관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구조·구급 |
| ⑬ 재난수습홍보 | | | |

□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 편제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담 당
통합지원본부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부 시 장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안 전 총 괄 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공 보 협 력 과
연 락 관	- 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안 전 총 괄 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안 전 총 괄 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건 설 과 신 재 생 에 너 지 과 보 건 소 자 원 순 환 과 군 산 소 방 서 군 산 경 찰 서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지원	디지털정보담당관 안 전 총 괄 과 교 통 행 정 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행 정 지 원 과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복 지 정 책 과 경 로 장 애 인 과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graph TD
    A[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 B[통합지원본부장 겸직]
    A --> C[피해자지원센터총괄조정  
- 피해자 정보 입수공유  
- 민원 처리현황 종합관리]
    A --> D[피해자지원  
상황관리]
    A --> E[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A --> F[민원접수  
- 실종자신고 접수  
- 수습상황 문의 응대]
    A --> G[치료지원  
- 부상자 입퇴원 관리  
- 치료비지급관련 관계기관 협의]
    A --> H[장례지원  
- 장례비 지급 절차 등 안내  
- 장례업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
    A --> I[심리지원  
-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원]
    A --> J[법률지원  
-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 법률상담 기관 연결]
    A --> K[협업지원  
- 피해신고 접수 현황 파악 및 보고  
- 직간접 지원 관계기관 협의  
- 협조요청]
    A --> L[이재민구호  
-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급식,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 제공]
    A --> M["(필요시)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피해자 협의회 구성·활동 지원  
- 자조모임활동 지원"]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통합지원본부장 겸직

피해자지원센터총괄조정
- 피해자 정보 입수공유
- 민원 처리현황 종합관리

피해자지원 상황관리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피해가족 대상 수습상황 브리핑
- 피해지원 언론브리핑

민원접수
- 실종자신고 접수
- 수습상황 문의 응대

치료지원
- 부상자 입퇴원 관리
- 치료비지급관련 관계기관 협의

장례지원
- 장례비 지급 절차 등 안내
- 장례업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

심리지원
-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 법률상담 기관 연결

협업지원
- 피해신고 접수 현황 파악 및 보고
- 직간접 지원 관계기관 협의
- 협조요청

이재민구호
-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급식,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 제공

(필요시)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피해자 협의회 구성·활동 지원
- 자조모임활동 지원

일대일 전담공무원
피해가족 요구사항 접수·전달
피해가족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보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② (생략)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u><신 설></u> 7. (생략)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u>공보관</u> , <u>연락관</u> , <u>상황총괄반</u> , <u>현장대응반</u> , <u>자원지원반</u> , <u>대민지원반</u>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임무를 수행 한다. ⑤·⑥ (생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 ----- --- <u>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u> , <u>공보관</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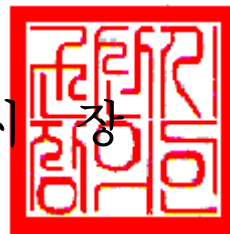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26-2290호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243(2026. 8. 26.)호

- 현재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특별재난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도록 함
- 대부분 지방정부 조례에 발급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참고조례(안) 배포 및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신설

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dongseok7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정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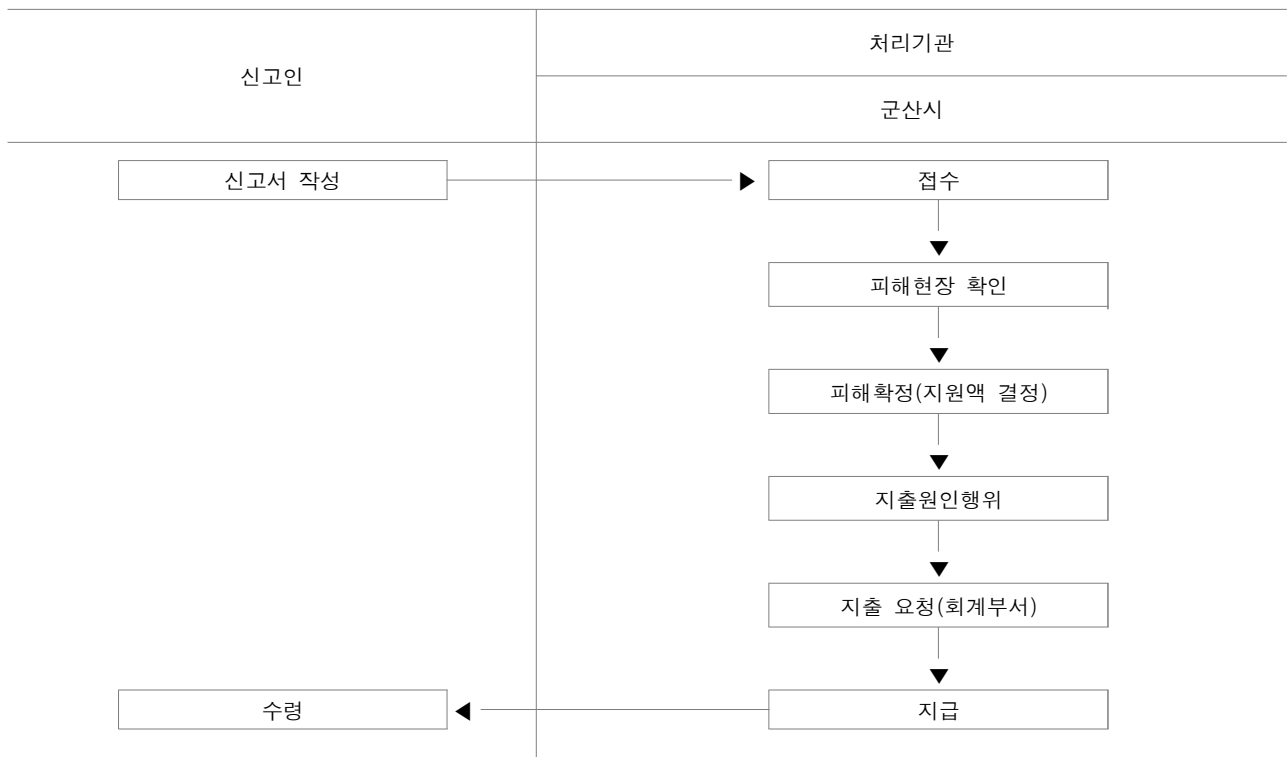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 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내 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도			
제출처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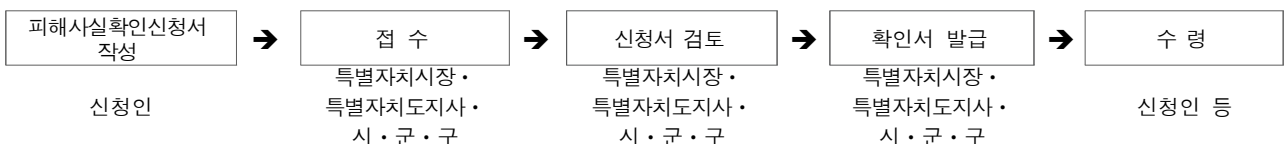
군산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
서 같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략)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u>별지 서식</u>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u><신설></u>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별 지 제1호서식-----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 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 으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서 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 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 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u>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 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해야 한다.</u>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6-2295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청 청원경찰 감독자의 업무부담 및 책임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감독자수당을 조정하고, 본청 감독자 보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사운영 애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자 직책수당 월 지급액 변경

- 본청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에 대한 수당 월60,000원 증액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행정지원과(조촌동, 군산시청)
- 전화: ☎063-454-2234, FAX) 063-454-600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 례 안 내 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독자 직책 수당(제8조 관련)

직책		수당(월 지급액)
총괄부서 소속	대장	180,000원
	반장	160,000원
	조장	140,000원
외청 및 사업소	반장	40,000원
	조장	30,000원

붙임 1

규칙안 신·구 별표 대비표

<신·구 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직책		수당(월 지급액)	직책		수당(월 지급액)
총괄부서 소속	대장	120,000원	총괄부서 소속	대장	180,000원
	반장	100,000원		반장	160,000원
	조장	80,000원		조장	140,000원
외청 및 사업소	반장	40,000	외청 및 사업소	반장	40,000
	조장	30,000		조장	30,000

붙임 2

관련 법령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 1호〉

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6. 5. 19.] [대통령령 제36334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6 - 2354호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전화 : 063-454-3752, FAX : 063-454-603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063-454-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
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산
시 건축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이 없는 1층인 건축물로서 높이가 7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이 없는 1층인 건축물로서 높이가 7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5. 그 밖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생략)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⑦(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생략)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 ⑤(생략)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 ③(생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생략)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생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

(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생 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

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군산시 건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건축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6-10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산시장



1. 사 업 명 :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위치 :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8-11번지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2,800, 도 360, 시 840)
5. 사업기간 : (당초) 2023~2026 (**변경**) **2023~2027**

6.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7.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 산들행복관 신축

나. 지역역량강화 : 거점지 기능강화, 활동가 양성, 배후마을서비스전달,
마을경영지원 등

8.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3,500	3,500		
1	옥구	선제	98-11	대	3,500	3,500	군산시	

9.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9	공원	소공원	옥구읍 선제리 98-11일원	844	감)844	-	군산시 고시 제2018-10호 (2018.1.12.)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공원 (소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 844㎡	·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를 ‘산들행복관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기타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계(☎063-454-483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6-13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0건, 변경 3건, 폐지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10.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54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19 (미장동)	20260930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	건물번호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20 (금암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22 (금암동)	20260928	건물번호 변경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3	건물번호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22 (금암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18 (금암동)	20260928	건물번호 변경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4	건물번호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18 (금암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20 (금암동)	20260928	건물번호 변경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0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98 (오식도동)	20260930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91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양안3길 36-3 (조촌동)	202609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9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로 32 (비응도동)	20260918		20100125	섬 이름 사용	
8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흥남동 818-4, 818-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흥2길 45 (서흥남동)	20260917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9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21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할미로 94 (미룡동)	202609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영동 14-5, 20-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금길 12 (신영동)	202609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785-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갈마길 4 (산북동)	202609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2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신영길 23-1 (신영동)		202609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3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신영길 27 (신영동)		2026091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4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신영길 25 (신영동)		20260915	건축물대장 말 소로 인한 건 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5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금길 14 (신영동)		20260915	건축물대장 말 소로 인한 건 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6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금길 12 (신영동)		20260915	건축물대장 말 소로 인한 건 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 리 5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십자 들로 45	20260910		20100125	나포면 서포, 주곡, 옥곶리 에 십자들이 존재하여 지 역명칭 인용	
18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0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 로 88 (오식도동)	20260909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6-14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170호(2021.11.19.)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운동 1234-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나운동 1234-40번지 외 5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나. 명 칭 : 은파유원지 더테라스 관광호텔 신축공사(2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당초

－ (전 체) : 부지면적 38,361㎡, 숙박시설(문화관광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면적 9,297.90㎡, 연면적 58,843.64㎡

－ (2단계) : 부지면적 21,140㎡,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면적 5,499.96㎡, 연면적 43,491.64㎡

나. 변경

－ (전 체) : 부지면적 38,361㎡, 숙박시설(문화관광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면적 3,867.26㎡, 연면적 15,780.71㎡

－ (2단계) : 부지면적 21,140㎡,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면적 69.32㎡, 연면적 69.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시엘티개발(주) 대표 정호경

나. 주 소 : 군산시 은파순환길 20, 4층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고시일 ~ 202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38,361	38,361					
1	나운동	1234-31	대	14,474	14,474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단계 사업완료
2	나운동	1234-36	대	2,366	2,366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3	나운동	1234-37	대	118	118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나운동	1234-38	대	179	179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	나운동	1234-39	대	84	84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소 계				17,221	17,221					
6	나운동	1234-35	임	404	404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단계 사업시행
7	나운동	1234-40	임	16,348	16,348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8	나운동	1234-41	임	868	868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9	나운동	1222-4	전	320	320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0	나운동	산366-22	임	1,208	1,20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미룡동	산153-1	임	1,992	1,992	정성혁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16			
소 계				21,140	21,140					

군산시 고시 제2026-14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산12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산1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월명공원)사업
 - 나. 명 칭 :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의 면적 : $A=3,054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산림녹지과)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7. 07.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지방자치단체 시행)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2)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계	1필지			3,054					
1	군산시 소룡동	산120	임야	835,751	3,054		군산시			

군산시 고시 제2026-14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 나. 명 칭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제1종근린생활시설(급수배수관련시설)
증축, 주6동/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55.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하수과장)
 -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지

일련 번호	읍면동	지번	지목	소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총 1필지					20,860.7	365.42			
1	옥도면 선유도리	474	잡	국	20,860.7	365.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제2026-2338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6. 10. 12.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6. 10. 12.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새긴날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조	군산시월명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2026.10.	NBR	자동인증기 교체	월명동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새긴날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폐기	군산시월명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2004.05.	주석	자동인증 기 교체	월명동